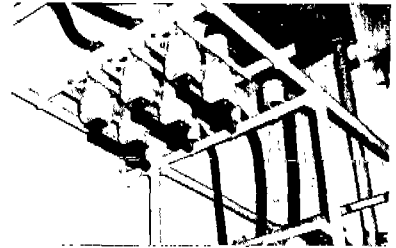




전기사고 소송판례 ①



引入 케이블 移設 工事時

오관으로 感電死亡

〈2〉



3. 피고의 준비서면(발주자)

원고 : 박○○○의 3

피고 : ○○○○(주)의 1

위 당사자간 귀원 87 가합 35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 대리인은 그 주장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사고의 경위

(1) 본건 사고의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원인은 옥외선에서의 주○○의 전선접촉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전실 안에서의 작업은 아무리 주의 깊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옥외에서의 상상할 수도 없는 또한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변전실내에서의 과실이 누구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2) 변전실 내에서 누구에게 과실이 있었던가를 규명할진데 이는 오로지 수급자인 삼륜전기(주)가 공사도급 계약서 내용대로 안전관리 등

모든 조항을 충실히 지켰느냐가 문제될 뿐입니다. 피고 공사업체는 위 계약내용은 아랑곳 없이 소위 관례대로 수년전부터 회사의 일을 해 왔다는 이○○, 진○○ 등을 금작고용하여 이들에게 작업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사장인 황○○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영업부장 황○○(사장의 아들)을 보내어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을 감독케 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인 것입니다. 상피고인이 도급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3) 작업경위를 살펴보건대

가) ○○전기 소속 전공 이○○ 진출에 의하면 공사가 오후 8시 정각에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7시경에 대일에 와서 사전답사를 한 후 작업에 필요한 기구 등을 가지고 오후 7시 30분경 도착하여 저녁식사후 사전에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출하고 있고 황○○ 자신도 낮에 작업하는 주○○의 3명에게는 전화로 현장에서 안전하고 바르게 공사일을 할 수 있게 지시를 했고 밤에 작업하는 이○○의 1명에게는 전화로 공사개요를 설명하고 안전하게 일을 하

라고 지시한 후 공사지시 감독을 영업부장 황○○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갑 4 - 10).

나) 또 경찰에서의 신문조서에서 ○○전기(주) 소속 전공 주○○도 ○○전기(주) 영업부장인 황○○의 작업지시에 따라 옥상에서 전주에 올라가 있는 주○○에게 “전기를 끄라”는 지시에 전기를 껐다는 것입니다(갑 4 - 9).

다) 또한 ○○전기(주) 영업부장 황○○은 1987년 2월경 당 빌딩 전기실 고압계량기 재검 및 계량기함 및 배선 교체공사를 할 때 현장답사 후 전적서 제출 및 공사 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교체 공사에 따른 작업 사항 및 지시를 전공들에게 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은 사실이 있었으며, 이번 공사도 첫번째 공사와 마찬가지로 전적서 제출 및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당일 오전부터 전공들에 대한 공사지시 및 감독을 했으며 ○○전기(주) 대표이사인 황○○도 오전 11시경 현장에 잠깐 와서 영업부장이며 아들인 황○○ 및 작업자(주○○외 3명)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놓고간 사실이 있습니다(을4-31).

위 경위로 볼 때 피고회사의 주○○는 기이 진술한 바대로 변전실의 문을 열어주고 황○○ 부장에게 작업시작을 하여도 좋다고 하여 동인이 옥상에서 옥외전주에서 작업중인 주○○에게 지시하여 전기를 절단시키고 작업한 것이 사실인 바 다만 현장에서 동인들의 작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협조한 것뿐인데 이 사고의 책임을 동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을 2호의 1 - 4 참조).

위 주○○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사업체에 공사를 일괄 도급을 준 이상 그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의 여부와 완료시의 인수만 받으면 됩니다. 본건 작업지시 및 감독은 공사업체가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원고는 왜 원고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작업을 하였느냐면서 작업준비 단계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은 피고 대일의 사용

인인 주○○에게 있다는 듯 주장하나 본건 공사는 옥외 땅파기 공사를 시작으로 아침 9시경부터 시작되어 옥내 변전실에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의 일괄연속된 공사이지 옥내공사는 독립된 별도의 공사인양 주장하면서 준비단계에 일어난 사고라 운운하나 이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위 옥내 작업도 ○○전기의 황○○ 부장이 도착하여 그 사람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전기공사업법이 규정한 전기공사 사용장비(부표-공사업법)에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기구는 접지용구, 고압접전기, 안전히리머 로프, 방전고압고무 절연장갑(고압용 7kV) 등 이러한 자재 및 기구를 작업자에게 필히 지참시켜 작업전에 점검 및 작업에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준비없이 인연히 일을 시작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176조(정전작업시의 조치 3항)에 의하더라도 전기공사업자는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이었을 때는 검전기에 의하여 충전여부 및 오결선, 다른 선로와의 혼촉 또는 비상발전기의 역송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결론적으로 본건과 같이 전기공사업법 제 3조에 의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전기공사업체에게 공사계약서에 의한 하도급을 준 경우 ○○전기(주)는

(1) 첫째, 전기기술자 1급 자격소유자이면서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전공들에게 공사지시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전기기술자가 아닌 ○○전기(주) 영업부장 황○○에게 공사를 감독 및 지시를 하게 하였고

(2) 둘째, 작업자에게는 계약서(제 4조 안전관리 및 사고 보상) 및 전기공사업법 및 기타 법령의 의해서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점검장비(검전기)를 지참시켜, 공사에 사전점검 및 안전하게 하여야 하고 또 작업자들은 고압 고무 절연장갑을 착용하여 안전을 기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았고 또 검전기로 작업시행전에 점검을 해야 하고 전기공사업자는 산업안전법(176조 정

전 작업시의 조치)를 이행치 않은 잘못이 있고

(3) 세째, 제일 큰 잘못은 ○○전기(주) 소속 전공 주○○이 전주에서 G. O. S를 일단 끈 다음 본인의 실수로 "ON" 선을 다시 당겨서 묶는 바람에 전기가 다시 흘러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위 사실을 종합 검토할 때 본건 사고 원인에 관하여는 피고 ○○은 물론 옥내에서 작업을 한 자들의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거나 더욱이 피고 ○○의 사용자인 주○○의 중과실을 전제로 한 도급자로서의 책임을 근본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4. 피고 ○○○○(주)은 본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은 전술한 바대로이나 원고 주장하는 일일수익 등에 관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향후 34년의 생존을 전제로 55세까지 1260개월분을 일일수익으로 산출 청구하고

있으나 이런 장기에 공한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은 분담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타이프 닷츠식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2) 원고는 내선전공으로서 1일 노임단가를 전제로 하고 1개월간의 노동가 동일 25일로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건 공사의 경우와 같이 간혹 가다가 요청이 있을 때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항시 25일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25일을 기준으로 산정청구함은 부당한 것입니다.

(3) 위자로 청구 또한 원고의 경력, 가족관계 기타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의 처, 장○○에게 자금 5,000,000원 딸에게는 금 3,000,000원, 모에게는 금 1,000,000원을 청구함은 배상금의 형평성의 견지에서 과도한 것입니다.

1987. 10. 10

위 피고 (○○○○(주)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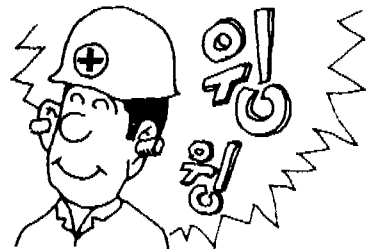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소음에 귀마개를 끼우자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소리가 많이 나는 프레스작업, 연마작업, 방적공장의 직포작업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이 일어난다. 즉 강도높은 소음이 계속되면 청신경이 파괴해져서 소리를 전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소음이 중단되고 시간이 지나면 청력은 정상적으로 되돌아 오지만 소음이 계속 반복될 경우 청신경이 회복되지 못하면 영원한 청력손실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소리를 전부 못 듣는 것이 아니고 특정 주파수인 4,000HZ를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본인은 알지 못하나 청력검사로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나 처음은 부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직업성 질환이 초기에 본인 자신도 느끼지 못하나 반복해서 소음에 접하게 될 경우 회화음역의 주파수까지 침범하여 대화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밖에 강렬한 소음에



따른 신체반응은 혈압, 맥박, 호흡이 증가하고 작업능률 저하와 불안정상태로 잠을 설치는 수면장애가 오며 정서불안으로 산업재해의 간접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방대책

예방책으로는 격리, 밀폐, 공학적으로 소음발생원의 차음시설이 필요하나 이론상 가능한 하지만 작업조건상 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인보호구인 귀마개를 착용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극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대책이 된다.

4. 증인 전기보안담당자에 대한 신문 사항

① 증인은 1987. 4. 28일 본 사건이 발생 당시 ○○○○(주)의 직원으로서 변전실 전기주임으로 재직 근무하고 있었지요?

대답 : 예

② 증인은 사건당일에 전기공사 관계로 8시 이후에 단전한다는 것을 통보하여 8 : 40분경에 정전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대답 : 예

③ 증인은 그 당시 공사도급자인 ○○전기(주)의 현장대리인 황○○과의 협의나 입회없이 부재중에 증인 단독 주관으로 작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지요?

대답 : 아닙니다. 공사업체 황○○이 지시한 것입니다.

④ 공사도급자의 현장 대리인 황○○은 전기보안담당자의 사전 승낙과 지시없이 절대로 휴전공사를 착수할 수가 없지만 전기보안담당자 주○○ 자신은 그 직책과 직권으로 임의로 대기중인 전공에게 작업개시를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대답 : 아니다. 사전에 허락하여 8시에 정전작업을 한 것이다.

⑤ 그래서 증인 자신이 먼저 변전실에서 부하 스위치를 하나 하나 꺼나가다가 마지막으로 변전실내 전등 스위치는 신호등 용으로 끄지 않고 남겨놓은 채 전주에 올라가 유입 개폐기를 끄도록 지시 연락하였지요?

대답 : 지시 연락을 옥상에서 황○○부장이 했다.

⑥ 그러니까 증인은 변전실 내부 외 6600볼트 고압 유입차단기는 수동조작으로 끄지 않고 전등불이 꺼지니까 고압전기가 단전되었다고 믿고서 옥상에 있는 사람에게 향해 신호를 한 것이지요?

대답 : 아니다. 고압유입차단기는 전주에서 스위치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꺼진다.

⑦ 그리고 증인은 변전실내에 대기중이던 망진○○이와 이○○전공에게 작업을 착수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지요?

대답 : 아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작업을 착수한 것이다.

⑧ 증인은 이때 1987. 8. 27일 제출한 증인 측 준비서면 2조(1)항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단지 고압콘벤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켜 방전상태 여부를 점검하라는 정도의 얘기만 하였을 뿐이지 그 외의 공사 진행에는 전혀 관여치 않았던 것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진술내용 그대로 사실이지요?

대답 : 예. 전주에서 G. O. S만 제대로 꺾으면 작업에 아무 이상이 없다.

⑨ 고진○○이는 공사를 어느 만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족을 하였거나 추락한 사고가 아니라 공사를 착수하려는 찰라 초기 단계에서 활선을 만지는 순간에 감전된 사고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대답 : 초기단계가 아니고 아침부터 쪽 연결된 공사진행 사항이다.

⑩ 증인은 실내의 고압 유입 차단기 2차부분에 대해서는 고압을 지시하는 전압계나 고압계 량기에 대해 확인도 지시도 안한 상태에서 작업의 착수를 명령한 것이 사실이지요?

대답 : 착수 명령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⑪ 증인은 사고가 발생한 찰나 고압계량기에 신호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전기가 살아 있었다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때 비로소 이 부분에 대해 점검과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시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대답 : 계약서에도 명시했듯이 점검 및 안전조치를 하여 작업에 재해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⑫ 증인은 한전 고압전기를 끊기 위해 전주에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 왔는지 그 동태 파악을

직접 간접으로 확인치도 않고 신호등 불이 꺼진 것만 보고 단전이 되었다고 속단한 것이 사실이지요?

· **대답:** 안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정전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⑬ 변전실 내부에 가설된 전선은 피복이 안된 나체전선이 아니라 전기절연이 잘된 피복 절연 전선으로 시공되어 있어 가사 실수로 만졌다 하더라도 감전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는 아니지요?

대답: 예

⑭ 1978. 8. 27 ○○○○(주) 소송대리 변호사의 준비서면 1조(1)항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본전에 있어서 ○○○○(주)와 수급인과의 간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지 않았고 또한 수급인의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바 없다고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과 안일한 감독태도가 마치 대안의 화재를 구경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를 불성실하게 하여 감전사고를 유발하게 한 잠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대답: 계약서 참조. 계약서 제 4조에도 나와 있듯이 고용원 및 종사자에 대한 모든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실시를 하여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⑮ 증인은 빌딩내의 전기 보안담당 책임자이며 동 빌딩내의 어떠한 전기공사를 막론하고 증인의 승낙과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여전에서 본건 공사 당시에는 하도급자의 책임자 황○○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증인이 기능공에 속하는 전공들에게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 사고가 발생케 된 것에 대해서 증인에게 절대적인 과실이 있는 것이지요?

대답: 국가가 인정하는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일괄 도급을 맡은 이상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여 공사를 완공한 다음 ○○○○(주) 혹은 공사내용을 확인한 다음 인수만 맡으면 된다.

⑯ 기타 하실 말씀은?

(가) 이○○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저희는 공사가 20:00경부터 시작한다고 하여 미리 19:00경에 와서 사전답사를 한 후 작업에 필요한 기계 등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했고 그러므로 21:00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거짓증언입니다.

(나) ○○전기(주) 황○○이 조명기구 준비 관제로 미처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조명시설을 이미 이○○의 1명 그리고 부장인 황○○이 가지고 와서 설치를 끝내고 우리 건물 옆의 여관에서 전기를 켤 수 있게끔 다 조치를 취한 후였으며 이○○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다른 전기공사에서 일을 하러 온 (주○○)사람에게 전주 위에 부착되어 있는 ○○빌딩으로 들어오는 전압선로 차단기(G. O. S)를 내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했고 주○○의 검찰진술에 의하면 “단전하는 신호는 황○○이 옥상에서 주○○에게 육성으로 연락을 하도록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황○○의 신호에 따라 단전스위치를 주○○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의 경찰조서에서도 이○○, 진○○에게 황○○이 우선 지시를 하여 놓은 상태라 이○○, 진○○ 등이 그러한 공사를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공사를 하여 황○○의 지시나 황○○의 지시 감독이 없어도 이○○, 진○○이 알아서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측에서는 전기 주임인 주○○가 일을 지시감독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일괄 도급을 준 이상 도급받는 ○○전기(주)가 공사 마무리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다) 일괄 도급을 준 이번 공사와 같이 국가가 인정하는 2종 전기 공사업체인 ○○전기(주)는 전기공사업법 및 산업안전법 제 176조 정전 작업시의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G. O. S는 일단 한번만 끄면 사람이 다시 작동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다시 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의 G. O. S만 꺼지면 변전실 내부의 전기는 완전히 차단

되고 (2)번의 고압 유입차단기(O. C. B)는 자동 차단이 되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5. 공사업체의 반론 준비서면 (87. 10. 12)

원고 박 ○ ○외 3인
피고 ○○○○(주)외 1인

위 당사자 간의 귀원 87가합 35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전기(주)는 1987. 8. 27 피고 ○○○○(주)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사실을 반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발주-주장 1-(1): ○○○○(주)는 수급인과의 간에는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지 않았고 또한 수급인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시공-반론: 도급계약서 제 3조에 “을”의 현장 대리인은 “갑”의 감독자 지시에 따라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더욱이 본 공사는 주택건물 등의 신설 전기공사가 아니고 사용중에 있는 옥내 자가용 변전소 시설개수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야간에 낮선 외태 전공이 전기주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B/D내부의 전기를 단전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진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주-주장 (2)(3)(4)항: 전기공사 면허업자에게 시공 계약을 하였으나 공사 시공에 관여할 수 없고 안전조치도 도급자가 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시공-반론: ○○○○(주)는 전기공사업자가 안전한 환경과 여건하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선 안전조치를 취해 주고 완전히 확인한 후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지시해 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착공후의 기능공의 부주의이거나 미숙한 작업으로 야기된 사고만이 시공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이며 변전소 내부 구조상의 완전한 검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경솔히 작업을 지시하여 무지한 기능공이 감전 사망케 된 사실은 당시 현장에서 감독하고 지시한 ○○○○(주)의 전기주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발주-주장 2-(1): ○○○○(주)의 전기주임은 공사 직전에 고압 콘덴서를 가르키며 점검하라고 지시만 하고 공사 진행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시공-반론: 이것이 바로 감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의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의 전기주임이 고압 콘덴서를 점검하라고 지시하여 망진 ○○이는 지시한대로 고압 콘덴서를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외의 지시는 없어 안심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순간에 감전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고압 콘덴서는 유입차단기 2차측에 있어서 잠시 후에 방전이 완료되는 것에 대하여는 점검을 하였지만 유입차단기 1차측 다시 말해서 공사 시공부분은 그대로 전기가 들어와 있었던 것인데 이 상태를 확인하고 결전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함정이나 쥐덫에 뛰어 들어가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 위험성이야말로 ○○○○의 전기주임이 확실하고 성실성 있게 확인하고 작업지시를 했었더라면 이러한 봉변은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지시한 ○○○○(주) 측이 책임을 져야할 사항인 것입니다.

발주-주장(2): 현장에는 ○○전기 측의 영업부장 ○○○이가 있었다고 하였고 망진 ○○이나 주남식 등이 ○○전기 현장대리인에게서 공사 시공내용에 대해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공-발주: 영업부장 황○○이는 공사를 수주받는 영업 외부사원으로서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책임은 없는 것이고 당시, 황○○이가 현장 책임자였는데, 앞서 준비서면에서 진술한 바대로 밤 9시에 야간작업이 시작할 것을 예정

하여 조명기구 준비 등으로 잠시 회사에 왔다 막 도착되는 순간 8:40분 경에 ○○○○(주) 전기주임의 승인과 단독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발주-주장(3): ○○○○전기주임은 통전상태를 점검할 의무가 없이 공사 준공접수 인수만이 책임의 전부라고 하였는데,

시공-반론: 사용중에 있는 고압 변전실의 전기공사를 야간에 시공토록 지시한 이상 각종 동력, 전동 엘리베이터 전기를 끄고 나서야 공사가 착수되는 것이므로 전기주임이 감독하고 지시하고 확인이 없으면 절대로 기능공 전공의 임의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 고압 콘덴서 1부만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그 자체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발주-주장(4): 피고 ○○전기 황○○과 전공 주○○이 각기 500,000원 벌금과 금고 8월이 선고되고 ○○○○측은 입건된 바 없는 점으로 미루어 아무런 죄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시공-주장: 경찰조사에서는 그저 공사 수급 관계의 관점에서 일반적이며 또한 일방적으로만 조사를 하였는데 검사 조사시에 기술적으로 누가 착오를 일으켰는지가 규명되어 긍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되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당사의 동기, 과정, 환경 기타 기술적인 기타 사항들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987. 10. 12

서울 성동구 ○○동

위 피고 ○○전기(주) 대표이사 황 ○ ○

서울민사지법합의10부 귀중

6. 공사업체의 준비서면(87. 12. 1)

87가합 손해배상(87. 12. 1)

원고 박 ○ ○ 외 3인

피고 ○○○○(주) 외 1인

위 당사자 간의 귀원 87가합 3570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전기(주)는 ○○○○(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1987. 4. 28일 ○○전기(주)는 ○○○○의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빌딩의 각종 사무실이 퇴근하고 완전히 정전이 가능한 밤 9시에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2) 비교적 빨리 퇴근하게 되었던지 ○○빌딩 전기주임 “주○○”는 공사업자의 현장 책임자 “황○○”이 조명기구 준비 관계로 미처 현장에 도착되지 않은 부재중에 “주○○”의 주관하에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복잡한 고압 수전을 하는 빌딩 수용가에게 내부 사정에 대해 생소한 외래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는 먼저 전기주임은 설비에 접근 못하도록 통제구역 설정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며 업자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전기주임이 정전을 시키고 검전을 한 후 승인이 없으면 절대로 전기설비를 만지지 못하는 법이며, 또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고압수전을 하는 빌딩의 공사를 할 때에는 당사의 전기주임은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저압배전반(1)의 모든 스위치를 끄며 다음은 고압유입 차단기(2)를 끊어 고압설비에 대해 단전한 후에야 전주위에 있는 유입개폐기 O. S(7)를 끊는 것이 정상적이며 안전한 조작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딩 전기주임은 저압배전반(1)의 1부 스위치만 끊고 신호용으로 전동(8)을 켜 놓기 위해 고압유입차단기(2)를 끊지 않고 고압변압기 등을 살려 놓은 채 옥상에 있는 ○○전기 황○○에게 연락하여 주○○(6)을 전주에 올려 보내 주상 O. S(7)을 OFF 하도록 지시하였다.

(5) 그래서 전공 주○○이 주상 O. S(7)을 OFF 하여 변전실의 신호용 전동(8)이 꺼지니 전기주임은 전공 고 진○○이에게 작업을 개시하도록 승인하고 지시하였다.

(6) 고 진○○은 변압기와 고압콘덴사동(3)을 점검하여 정전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작업장소(9)에 올라가 절단하려는 순간에 감전된 것이다.

(7) 그러면 왜 이때 고 진○○이가 감전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는가? 4항에서 진출한 바와 같이 기술적이고 순차적으로 배전반 스위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먼저 저압 배전반(1)을 끊고 고압 유입차단기(2)를 끊고 전류계(4)를 보고 변압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확인한 연후 전공 주○○(6)을 전주에 올려 보내 주상 O. S(7)을 끊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고압배전반의 전압계(10)을 보고 그때 전기가 완전히 단전된 것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전주의 주○○이 오조작을 하였고 O. S의 개폐상태가 불량하였던 간에 고압전기는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 작업을 하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8) 전기주임 주○○은 미숙한 탓이었거나 단일한 자세였든지 간에 신호용전동(8)이 꺼지니까 고압전기가 다 꺼진 것이라고 속단하고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전공에게까지 그 이상의 점검이나 확인을 하거나 지시도 않던 채 작업을 지시하였으니 전공으로서의 전기기술자인 전기주임의 지시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그러면 주○○이 전주상에서 유입개폐기(7)을 끊었는데 왜 다시 고압전기가 살아 들어오게 되었는가? 주○○의 진출내용에 따르면 1차로 O. S를 끊고 나서 자세가 불안하여 바로 잡고 나서 끊어졌는지의 여부가 모호하여 O. S를 다시 넣은 것 같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나 행동은 항시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는 O. S 기기의 불량으로 1선 또는 2선이 내부에서 끊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전기주임은 전주에 올라갔던 전공 주○○이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거나 또는 직접 끊었다고 보고를 받은 후 같이 임회하여 고압 배전반의 전압계(10)을 보고 또 고압설비에 대해 단전여부를 확인한 후 안심된다는 마음을 굳힌 후에 비로소 작업개시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주의

성이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것은 전기주임의 과실이 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휴전공사라 하면 대부분이 고압을 취급하는 공사인데 이것은 한국전력과 같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또는 세계 공동사항으로서 1차적인 안전조치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 수용가의 전기주임이 조작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의무사항으로서 그 규정이 개념상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2차적으로는 전공의 주의성과 성격과 그때 그때의 심리상태에 따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사람이 있으나 금번과 같은 사항은 10평미만의 좁은 장소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지닌 당사의 전기주임이 목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는 광경을 보아온 전공으로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든 격언과 같이 믿었던 상황에서 더욱이 자신이 고압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전공 자신이 직접 해 보았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지 못한 채 공사를 착수하게 된 것이 감전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11) 결론은 (1)공사 공정이 극히 간단하여 빠르면 1~2시간 내에 완료되는 공사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현장대리인 부재중에 전기주임 주관하에 공사를 개시하였었고, (2)안전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정상적이고 기술적인 과정을 이행치 않고 변칙적이고 기술적으로 미숙한 불확실한 방법을 택하였으며 (3)주상에 올라 갔던 전공 주○○이 내려오는 것을 확인치 않고 그 다음의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 착수 찰나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주) 측에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1987. 12월 2일

위 피고 ○○전기(주)

대표 황 ○ ○

서울 민사지점합의10부 귀중

<다음 호에 계속>